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안)

(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 및 적용지침) (개발 입력)



선 체 규 칙 개 발 팀

- 주요개정내용-

- (1) 2021.07.01일자 시행사항
 - 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 및 적용지침()
 - 4장 1절 103.(3)
 - 4장 2절 201.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 제 4 장 설계조건	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 제 4 장 설계조건	
제 1 절 설계하중	제 1 절 설계하중	
101. ~102. 〈생략〉 103. 파랑하중 1.~3 〈생략〉 4. 파랑하중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파랑하중은 가동해역에서의 계획수심에 대하여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파도이론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모형에 대하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조시험에 의하여 파랑하중을 구하여도 좋다. (2) 파랑은 구조물에 대한 모든 방향의 파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3) 갑판상에 작용하는 파랑하중, 수면하의 부재에 직접 작용하는 하중, 경사된 상태 또는 구조물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4) 파도에 의하여 야기되는 진동도 고려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101. ~102. 〈생략〉 103. 파랑하중 1.~3 〈생략〉 4. 파랑하중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파랑하중은 가동해역에서의 계획수심에 대하여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파도이론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모형에 대하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조시험에 의하여 파랑하중을 구하여도 좋다. (2) 파랑은 구조물에 대한 모든 방향의 파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3) 갑판상에 작용하는 파랑하중(그린파랑하중), 수면하의 부재에 직접 작용하는 하중, 경사된 상태 또는 구조물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4) 파도에 의하여 야기되는 진동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하중 용어 명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4 장 수밀성 제 2 절 폐쇄장치	제 6 장 수밀성 제 2 절 폐쇄장치	
201. 일반 해수가 침입할 염려가 있는 개구의 구조 및 폐쇄장치는 선급 및 강선규칙의 4편 3장 3절 및 국제만재흘수선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반잠수형 구조물에 설치되는 것으로 침수계산의 구획 외에 있고 특별히 고려된 것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201. 일반 해수가 침입할 염려가 있는 개구의 구조 및 폐쇄장치는 선급 및 강선규칙의 4편 3장 3절 및 국제만재흥수선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반잠수형 구조물에 설치되는 것으로 침수계산의 구획 외에 있고 특별히 고려된 것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무인구조물의 경우 출입문등의 건현갑판상의 의장품에 대하여 수밀 및 풍우밀 유지를 위한 특별한 고려(즉, 이중문 또는 이중잠금장치 설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무인구조물의 폐쇄장치 요건 상세 기술